

[별 표 1]

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한 각서

당사는 “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”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귀 공사 주관으로 참가하는 박람회에 통합한국관 참가업체로 선정될 경우 아래 사항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1. 당사는 박람회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박람회 출장 기간 중 현지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.
2. 당사의 박람회 출장인력은 원활한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귀 공사 운영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.
3. 당사 전시품과 관련 상표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.
4. 당사는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, 정부·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는다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국고, 지방비 등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, 귀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국고지원금을 전액 환불하며, 향후 최대 3년간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.
5. 당사는 귀 공사의 지원사항 이외에 박람회 참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요구하지 않는다.
6.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기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, 박람회 참가제한 등 귀 공사의 소정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.
 - 1)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박람회에 불참한 경우
 - 2) 박람회 지원항목 외 별도 요청사항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주최사, 장치업체 등 관련 기관의 대금 청구요청에 불응하여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
 - 3)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박람회에서 직매를 강행한 경우
 - 4) 임의로 배정부스를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
 - 5) 귀 공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담실적 제출요청 등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박람회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
 - 6)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

20 년 월 일

업 체 명 :

대 표 자 :

(인)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